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150 - 1109

시행일자 1995. 7. 28.

(경유) (제1안)

수신 내 부 결 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부 시 장		
기획관리실장		0729
법무 담당관		
기안	법제계장	협조

결재 1.11 시장

제목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등 2건 공포

1.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등 2건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자 ~~하면~~ 합니다.

규칙 제 2707-2708 호

첨부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부.

2.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관(공보1담당관)

제목 규칙공포 통보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등 2건을 시보에 게재 공포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2707-2708 호. 끝.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규칙공포 통보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등 2건을 시보에 게재 공포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2707-2708 호 1부(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재산관리과, 상공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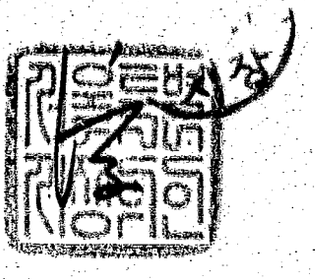

1995년 8월 5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위임취득하게 하는 시유재산의 취득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취득보고 누락으로 인한 재산 방치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매매계약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취득보고는 시청의 예산배정 주관부서가 하도록 함.

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과 같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동 서식에 있는 조항외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한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7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71 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등기수속등"을 "취득보고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여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국.과 및 사업소의 장(이하"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의하여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총괄관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기타 재산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를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36조중 "제2조제2항제5호" 를 "제2조제2항제7호"로 한다.

별지제18호서식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제18호서식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지제18호서식 하단에 다음과 같이 "주"를 신설한다.

"주"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시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등기수속등)	제20조(취득보고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국.과 및 사업소의 장(이하"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화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② 취득부서에서 시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의하여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총괄관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공유재산관리대장	1.공유재산관리대장 (시장)
2.등기부등본	2.등기부등본
3.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4.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재산의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서류	5.재산의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서류
6.기타 재산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6.기타 재산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현 행	개 정 안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를 당해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36조(시유재산관리 처분사무의 위임)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유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시유재산관리 처분사무의 위임) ....., 제7호,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것으로 본다.<단서신설>	제4조 ① .... ;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전액을 납부하는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 ① (생략)	제8조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7. < 삭 제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주":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시장